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57
----------	------

2025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5년도 추경예산(300백만원)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25.3.27.)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검토의견

1) 추진경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정원도시, 서울’¹⁾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도보권 거리에 공원과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정원도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 정책의 선명성을 더하고 있음.
-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총 10회²⁾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여 개최되고 있고 금년도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임.
- 서울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자체 간 우호 증진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5 부산 가든쇼’에 상호 교류정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1) ‘정원도시, 서울’(‘23.5.24.): ‘어딜가든, 서울가든’ ‘서울 어디에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

2)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번 포함, 제6회는 2020년~2021년에 걸쳐 개최

2)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조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의무부담”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 범위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제1호)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제2호)가 해당됨.

- 동 협약서는 제2조(협력사항)에서 부산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서울정원을 조성 (설계·시공)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조성된 부산정원을 운영·관리 하는 등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조례 제6조(자료제출)³⁾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의무 부담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동의안 및 별도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조례 제4조⁴⁾제1항에서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시의회 의장과 상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3)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4)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동의안의 경우 제330회 임시회(4.15.~5.2.) 의결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5.22.) 이전에 부산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전보고⁵⁾ 후 협약체결 및 시의회 사후동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그 사정이 인정되며, 협약서 제4조에 시의회 의결 이후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였음.

다만, ‘2025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으로 예산편성 후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4년 8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본 협약에 앞서 체결한 경위를 고려할 때,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3) 기타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을 교류 조성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이 수반⁶⁾된 것으로 ‘서울정원’과 ‘부산정원’에 구체적인 지역 장소성 및 고유의 정원문화가 내포될 때 문화의 확산이라는 협약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나, 협약서에는 단순히 ‘설계 및 시공’ 등 조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향후 추진상에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협약서 제3조(협약서의 변경)에서 ‘별도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서 변경 동의안 제출이 필요할 것임.

5)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 보고일 : 의장 및 상임위원장('25.3.11.)

6)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서울시-부산·진주시 업무협약 체결계획(조경과 -3970, '25.3.21.)

<부산가든쇼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부산가든쇼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위치도



부산가든쇼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현황사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 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025 부산 가든쇼’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시장 박 형 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657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나.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5년도 추경예산(300백만원) 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정원도시국 조경과 장재원(☎2133-2111)

서울시-부산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24.8월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2025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정원관련 행사장 내 상호 우호교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1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지출	○ 서울정원 조성	300,000	-	-	-	-	300,000
	소계(a)	300,000	-	-	-	-	3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00,000	-	-	-	-	300,000

※ 부산시에서 보라매공원에 부산정원 조성 예정(30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	-	-	-	-	-
시비	자체재원	300,000	-	-	-	-	300,000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300,000	-	-	-	-	300,000

5. 덧붙이는 의견

- 본 비용추계는 서울시 조경분야 사업대상지 조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함
- 추후 사업추진 시 계획안에 따라 상세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담당과장 : 조경과장 유혜미(☎2133-2100)
- 담당팀장 : 조경협력팀장 김승렬(☎2133-2107)
- 담당자 : 장재원(☎2133-211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출식	금액(원)	비고
합계		300,000,000	
설계	22,000,000원 × 1식	22,000,000	
정원조성	278,000,000원 × 1식	278,000,000	
식재기반조성	30,000원 × 360㎡	10,800,000	
교목	400,000원 × 30주	12,000,000	
아교목	250,000원 × 60주	15,000,000	
관목	7,000원 × 6,000주	42,000,000	
초화	7,000원 × 10,000본	70,000,000	
경계석	50,000원 × 150m	7,500,000	
의자	500,000원 × 10개	5,000,000	
포장	68,000원 × 140㎡	9,520,000	
테크	250,000원 × 30㎡	7,500,000	
정원안내판	2,500,000원 × 2개	5,000,000	
수목표찰	10,000원 × 50개	500,000	
앉음벽	400,000원 × 30m	12,000,000	
상징물	20,000,000원 × 1개	20,000,000	
파고라	15,000,000원 × 2개	30,000,000	
경관조명	20,000,000원 × 1식	20,000,000	
기타	11,180,000원 × 1식	11,180,000	수목이식, 철거, 가림막웁스 등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이하 “양 도시” 라 한다)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025부산가든쇼’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시장 박 형 준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이하 “양 도시” 라 한다)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부산가든쇼’와 ‘2025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3.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